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병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802

발의연월일: 2023. 2. 3.

발 의 자 : 임병헌 · 최형두 · 강기윤

한기호 • 구자근 • 이헌승

김영선 • 류성걸 • 안규백

김학용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·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며, 「병역법 시행령」은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음.

현재 예비군 동원자원이 부족할 경우 장교는 1계급 상·하위자를, 준사관·부사관의 경우는 1~2계급 하위자를 동원 지정하는데, 현행법 령에 따라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 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·하사 자원의 부족은 여전히 해 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

거를 마련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제2항). 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2항 전단 중 "장교임용"을 "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(군사교육소집 대상 등) ①	제55조(군사교육소집 대상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	②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예비역·보충역 또는 전시근로	
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<u>장</u>	<u></u> 장교
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	또는 부사관 임용
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	
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집기간	
은 120일 이내로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